

2024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 추경예산개요

1. 세입예산

- 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320억 2천 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천 9백만원(0.3%)이 증가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31,925,280	31,925,280	32,024,015	98,735	98,735	0.3%	0.3%
세외 수입	경상적	4,730,298	4,730,298	4,730,298	0	0	0.0%	0.0%
	임시적	13,064,307	13,064,307	13,064,307	0	0	0.0%	0.0%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14,120,149	14,120,149	14,225,897	105,748	105,748	0.7%	0.7%
보전수입등		10,526	10,526	3,513	△7,013	△7,013	△66.6%	△66.6%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세목	예 산 액					비 고
	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12,647,845	12,647,845	12,746,580	98,735	98,735	
기금	12,637,319	12,637,319	12,743,067	105,748	105,748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526	10,526	3,513	△7,013	△7,013	

2. 세출예산

○ 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4조 4,267억 7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조 3,375억 3천 2백만원 대비 2.1%(892억원) 증액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4,337,532,208	4,337,532,208	4,426,773,933	89,241,725	89,241,725	2.1%	2.1%
행 정 관 리	소 계	4,337,532,208	4,337,532,208	4,426,773,933	89,241,725	89,241,725	2.1%	2.1%
	행정운영경비	368,342	368,342	372,542	4,200	4,200	1.1%	1.1%
	재무활동	-	-	705	705	705	100%	100%
	사 업 비	4,337,163,866	4,337,163,866	4,426,400,686	89,236,820	89,236,820	2.1%	2.1%
교 부 금		-	-		-	-	-	-

Ⅱ .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2024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기금)’을 당초예산 대비 0.7%(1억 6백만원) 증액하고, ‘보전수입등(국고보조금사용잔액)’을 당초예산 대비 △66.6%(△7백만원) 감액하려는 것으로,
 - 당초 세입예산 319억 2천 5백만원에서 320억 2천 4백만원으로 총 9천 9백만원(0.3%)을 증액하려는 것임.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31,925,280	31,925,280	32,024,015	98,735	98,735	0.3%	0.3%
세외 수입	경상적	4,730,298	4,730,298	4,730,298	0	0	0.0%	0.0%
	임시적	13,064,307	13,064,307	13,064,307	0	0	0.0%	0.0%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14,120,149	14,120,149	14,225,897	105,748	105,748	0.7%	0.7%
보전수입등		10,526	10,526	3,513	△7,013	△7,013	△66.6%	△66.6%

가. 국고보조금 증액 및 사용잔액 확정

- 국고보조금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예산을 증액 하려는 것으로, 증액 규모는 기정예산(141억 2천만원) 대비 0.7%(1억 5백만원) 증액한 142억 2천 5백만원이며,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23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업 중 사용 잔액 확정에 따른 세입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감액하려는 것임.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국고보조금 및 보전수입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14,120,149	14,120,149	14,225,897	105,748	105,748	0.7%	0.7%
보전수입등		10,526	10,526	3,513	△7,013	△7,013	△66.6%	△66.6%

※ 내시(內示)의 의미

- 내시(內示) : (예산의 규모를) 내부적으로 알린다는 의미
- 가내시(假內示) : (예산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 미리 알린다는 의미
- 본내시(本內示) :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의미
- 확정내시(確定內示) : (국고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별 할당·배분을 확정함
- 변경내시(變更內示) : 확정내시의 변경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청소년관련 사업의 증감

- 국고보조금(기금) 증액 내역
 - 학교밖 청소년 지원 : 93,060천원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 5,700천원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추가 채용 지원 : 5,088천원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 1,900천원

※ 2023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 사용잔액 확정 내역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감액 내역

-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 1,104천원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 2,000천원
-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 352천원
-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 57천원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국고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8~10월 가내시(확정 전 미리 알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9~11월)편성 시기에 국고보조금을 각 시·도의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정부(여성가족부)는 서울특별시(평생교육국)의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을 마치고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에 확정내시를 통보하거나, 확정내시 후 변경내시를 통해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재조정하여, 서울특별시(평생교육국)는 확정 또는 변경내시 통보된 국고보조금을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상황임.
-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어, 서울특별시의 예산이 확정된 후 정부의 늦은 확정·변경내시로 인해 서울특별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불가피하며, 적정한 시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 연도 내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해 반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 여성가족부가 변경한 사업은 대부분 국비와 시비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고 서울특별시도 총 5개 사업의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바, 예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기 국고보조금의 확정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세출예산

- 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4조 4,267억 7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조 3,375억 3천 2백만원
대비 2.1% 증액(892억 4천 2백만원)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4,337,532,208	4,337,532,208	4,426,773,933	89,241,725	89,241,725	2.1%	2.1%
행정 관리	소 계	4,337,532,208	4,337,532,208	4,426,773,933	89,241,725	89,241,725	2.1%	2.1%
	행정운영경비	368,342	368,342	372,542	4,200	4,200	1.1%	1.1%
	재무활동	-	-	705	705	705	100%	100%
	사 업 비	4,337,163,866	4,337,163,866	4,426,400,686	89,236,820	89,236,820	2.1%	2.1%
교 부 금		-	-		-	-	-	-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부서별 세출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평 생 교 육 국	4,426,773,933	4,337,532,208	89,241,725	2.1%
교육지원정책과	4,019,244,215	3,931,958,227	87,285,988	2.2%
평 생 교 육 과	64,585,378	64,621,062	△35,684	△0.1%
청 소 년 정 책 과	92,986,454	90,995,033	1,991,421	2.2%
친 환 경 급 식 과	249,957,886	249,957,886	-	0.0%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기정	추경		
세입	총 계		31,925,280	32,024,015	98,735	
	지방세수입		0	0	0	
	세외 수입	소 계	17,794,605	17,794,605	0	
		경상적	4,730,298	4,730,298	0	
		임시적	13,064,307	13,064,307	0	
	보조금		14,120,149	14,225,897	105,748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526	3,513	△7,013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실 사용잔액 반영
세출	총 계		3,875,824,746	3,965,066,471	89,241,725	
	지방세 전출		1,757,043,000	1,840,453,063	83,410,063	○2023년 정산분 반영 ◦ 지방세 법정전출금(1,757,043백만원→1,840,453백만원)
	담배소비세 전출		257,277,150	263,847,978	6,570,828	○2023년 정산분 반영 ◦ 담배소비세 법정전출금(257,277백만원→263,848백만원)
	지방교육세 전출		1,811,356,000	1,808,656,897	△2,699,103	○2023년 정산분 반영 ◦ 지방교육세 법정전출금(1,811백만원→1,808백만원)
	기본경비		223,323	227,523	4,200	○교육협력관 직책급여무수행경비 반영 ◦ 직책급여무수행경비 (28백만원→32백만원)
	미래시민학교 조성 운영 (가칭 인생전환지원센터)		200,000	0	△200,000	○리모델링 공비 감추경(2023년도 ○월 예산 집행 가능) ◦ 시설비(200백만원→0원)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급식지원		212,282	376,598	164,316	○급식지원 기관별(사·구·교육청) 재원부담비율 부족분 확보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12백만원→376백만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2,609,020	2,624,097	15,077	○성북청소년문화센터 실외기 저장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 비용 증액 ◦ 민간위탁금 (2,513백만원→2,528백만원)
	사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28,768,700	30,534,060	1,765,360	○다자녀 사용료 감면 손실보전금 증액 ◦ 민간위탁금 (26,534백만원→28,299백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추가 채용 지원		862,104	869,472	7,368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 민간위탁금 (507백만원→511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5백만원→358백만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4,022,991	4,028,982	5,991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 민간위탁금 (3,417백만원→3,422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6백만원→607백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10,854,685	10,865,485	10,800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 민간위탁금 (9,224백만원→9,233백만원) ◦ 사회복지사업보조 (1,243백만원→1,245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85백만원→386백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395,491	2,581,611	186,120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5백만원→451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0	705	705	○청소년운영위원회 22년 국비 집행잔액 ◦ 국고보조금반환금 (0원→705천원)

- 2024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은 법정전출금 전출, 변경된 국고보조금 반영,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급식지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시립청소년센터 등 총 12개 사업을 증액하고, 미래시민학교 조성은 감액하는 등 총 13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려는 것임.

가. 법정전출금

-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정전출금(이하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서울시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교육세 전액,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 특별시세 총액의 100분의 10을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번 법정전출금의 증액은 2023회계연도 정산분을 반영한 것으로,
 - 지방세는 기정예산(1조 7,570억원) 대비 4.7%(834억원) 증액하고,
 -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2,573억원) 대비 2.6%(66억원) 증액하며,
 - 지방교육세는 기정예산(1조 8114억원) 대비 △0.1%(27억원) 감액하여,
 총 899억 8천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2024년 제1회 추경 중 “법정전출금” 증감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법정전출금	3,912,957,938	3,825,676,150	87,281,788	2.3%
지방세 전출	1,840,453,063	1,757,043,000	83,410,063	4.7%
담배소비세 전출	263,847,978	257,277,150	6,570,828	2.6%
지방교육세 전출	1,808,656,897	1,811,356,000	△2,699,103	△0.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 법정전출금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매월 전월 징수액의 90%를 전출하고, 월별 미전출 금액은 분기별로 정산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차년도 예산 또는 차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 차액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정산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④ 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제3조(의무)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 2023회계연도 법정전출금 대상세입의 징수현황 〉

(단위: 백만원)

세 목		2023년		지난연도 시세징수액	징수액 합계	법정전출금 대상여부	적용 비율	법정전출금
		부과액	징수액					
합 계								3,719,281
보통세		17,596,307	17,265,492	152,258	17,417,750	-	-	1,741,775
	취득세	5,218,465	5,147,181	29,909	5,177,090	대상	10%	517,709
	레저세	105,128	105,128	0	105,128	대상	10%	10,513
	담배소비세	604,609	576,611	0	576,611	대상	10%	57,661
	지방소비세	2,442,656	2,442,656	0	2,442,656	-	-	244,266
	5%분	695,886	695,886	0	695,886	대상	10%	69,589
	6%분취득세	814,631	814,631	0	814,631	대상	10%	81,463
	소비잔여분	932,139	932,139	0	932,139	대상	10%	93,214
	주민세	17,733	16,108	1,698	17,806	-	-	1,781
	개인분	17,733	16,108	1,698	17,806	대상	10%	1,781
	지방소득세	8,157,149	7,983,158	65,019	8,048,177	대상	10%	804,818
	자동차세	1,050,567	994,650	55,632	1,050,282	대상	10%	105,028
담배소비세		604,609	576,611	0	576,611	대상	45%	259,475
지방교육세		1,652,168	1,610,372	26,627	1,636,999	대상	100%	1,636,999
지방소비세6%분지방교육세		81,032	81,032	0	81,032	대상	100%	81,032

〈 2023회계연도 월별 법정전출금 전출 현황 〉

(단위: 억원)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 계	40,733	0	2,594	1,972	2,083	2,338	3,556	3,692	3,325	2,866	6,839	2,281	9,187
지방세	19,497	0	1,160	1,139	1,032	1,541	2,624	2,207	877	1,678	1,241	1,169	4,829
담배소비세	2,753	0	209	170	217	190	199	269	204	196	265	229	604
지방교육세	18,483	0	1,225	663	834	607	733	1,215	2,244	991	5,333	883	3,754

〈 최근 3년간 법정전출금 전출 현황 〉

(단위: 백만원)

		3년 평균	2023	2022	2021
소 계		4,169,096	4,073,337	4,467,627	3,966,325
지방세	본예산	1,950,771	1,658,365	1,626,814	1,395,930
	추경		291,291	539,815	340,100
담배소비세	본예산	267,846	252,904	242,436	243,371
	추경		22,431	24,013	18,383
지방교육세	본예산	1,950,479	1,720,730	1,775,969	1,730,527
	추경		127,616	258,580	238,014

〈 법정전출금 정산현황 〉

(단위: 백만원)

	2023 예산액	2023 징수액	2023 전출액	2023 정산액 (2024년 제1회 추경액)
지방세	1,761,108	1,741,775	1,658,365	83,410
담배소비세	261,992	259,475	252,904	6,571
지방교육세	1,926,002	1,718,031	1,720,730	△2,699

-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는 법정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추경’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 등 서울특별시 세입예산의 위축과 재정 불안정 상황을 고려할 때 매년 법정전출금의 전출 시기를 고민 없이 관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지는 않는지, 시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나. 미래시민학교(가칭 인생전환지원센터) 조성 운영

- 미래시민학교(가칭 인생전환지원센터)는 전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시민 주도의 다양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습 플랫폼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국방부 부지 매입 및 건물 리모델링 등 평생교육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이나,
 - 2023년 12월 서울연구원 상암 분원 청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서울연구원-기술연구원 통합 별관” 조성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2024년 본예산에서 편성된 리모델링 공사비는 기존 이월 예산 범위 내 집행이 가능하여 기정예산(2억원)에서 △100%(△2억원) 전액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미래시민학교(가칭 인생전환지원센터) 조성 운영 증감내역 〉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사유
시설비	200,000	0	△200,000	기 편성된 리모델링 공사비가 기존 이월예산 범위 내 집행이 가능함에 따라 감추경

- ※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미래시민학교(가칭 인생전환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센터의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 주요 내용은 건축, 철거, 조경 등 공사비, 폐기물처리용역 및 내부구성 설계용역 등 시설비와 감리용역 추진을 위한 감리비, 공사착수회의 등 자문회의를 포함한 시설 부대비 등이 편성된바 있음.

〈 2024년도 미래시민학교(가칭 인생전환지원센터) 조성 사업 내용 〉

- 조성기간 : 2022.1~2024.2월 (설계용역, 리모델링 공사)
- 사업위치 : 서울시 중구 정동 34-17, 34-18
- 사업규모 : 〈토지매입〉 855㎡, 〈리모델링〉 1,793.87㎡
- 사업방법 : 기존건물 리모델링
- 주요내용 : 부분 철거, 건축 공사, 감리용역 등
- 총사업비 : 총 21,277백만원(매입비 14,937, 용역 및 공사비 6,340)

〈 2024년도 미래시민학교(가칭 인생전환지원센터) 조성 추진 경위 〉

- '19.10. : 「시민학습활동 플랫폼 거점공간 조성 및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국방부 이전부지 매입 계획」 수립
- '20.1.16.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 결과(조건부 적정)
- 〈조건〉 신축 등 건물활용도를 높여서 추진하는 방안 검토
- '20.4.27. : 제3차 서울시 투자심사 심의결과(조건부 적정)
- '20.4.28. : 제3차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적정)
- '20.6.16. :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결과(수정 가결)
- 심의결과에 따라 '신축' 공사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사업 변경 추진
- '21.3.~4. : 건축기획 용역 추진(도시공간개선단)
- '21.4.29. : 설계공모 의뢰(평생교육과 ⇒ 공공건축지원센터)
- '21.5.11. : 제3차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적정)
- '21.6.~10.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운영(4회)
- '21.10.~12. : 공고 및 업체 선정
- '22.1.~8. : 리모델링 설계용역
- '22.9.~11. : 리모델링 공사 사전절차 이행 및 공사업체 선정
- '22.12.~ : 리모델링 공사
- '23.12.7. : 서울연구원 상암 분원 청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
- '23.12.8. : 재산관리관 변경(평생교육과 → 창의행정담당관)
- '24.4. : 리모델링 공사 준공

- 본 사업의 주체 및 재산관리관을 변경(2023.12.08.)함에 따라 평생교육국은 당초 편성한 예산을 전액 감액하려는 것으로,
- 본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71억 8천 2백만원, 2022년 94억 9천 9백만원, 2023년도 58억 3천 9백만원을 평생교육국이 편성했으나, 당초 기대한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효과나 성과도 없이 잦은 계획 변경으로 불필요한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 시민학습활동 플랫폼, 인생전환센터 등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서울연구원 분원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 2021~2024년 미래시민학교(가칭 인생전환지원센터) 예산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	집행잔액	비고
계	25,909	18,799	4,583	2,526	
2021	7,182	6,918	264	0	
2022	9,499	8,319	1,130	49	
2023	5,839	2,533	3,189	117	※ 공사계약 낙찰 차액으로 집행잔액 발생
2024	3,389	1,029	0	2,360	※ 공사비 200백만원 감추경 예정 ※ 현재 리모델링 준공 후 공사비 정산 및 지출 진행중

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 인정) 급식지원

- 본 사업은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비(4개교)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급식비 분담비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정예산(2억 1천 2백만원) 대비 77.4%(1억 6천 4백만원) 증액한 3억 7천 7백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2024년 제1회 추경 중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급식지원” 증감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76,598	212,282	164,316	77.4%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급식지원” 교육청, 자치구 예산편성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총 계	서울시(30%)	교육청(50%)	자치구(20%)			
				소 계	용산구	동대문구	송파구
소요예산	1,255,326	376,598	627,663	251,065	24,732	28,666	197,667
기 확보	994,464	212,282	555,849	226,333	0	28,666	197,667
부족예산(추경)	260,862	164,316	71,814	24,732	24,732	0	0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급식지원 사업 중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2023년도의 급식단가(6,300원), 급식일수 및 4개교의 대상학생수를 기준으로,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를 감안하여 신청률 90%에 해당하는 1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 기존예산 대비 증감률이 77.4%로 높다는 점과, 농수산물 등 물가의 변동률이 큰 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교육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라.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본 사업은 유아, 초등생, 중고생, 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성평등, 성의식 개선 등 성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 이 중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입주한 건물은 에어컨 실외기 가스열 펌프를 사용하는 시설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22.06.30. 공포)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기정예산(26억 9백만원) 대비 0.6%(1천 5백만원) 증액한 26억 2천 4백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2024년 제1회 추경 중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증감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소 계	(x684,768) 2,624,097	(x684,768) 2,609,020	(x-) 15,077	(x-) 0.6%
공공운영비	(x-) 470	(x-) 470	(x-) 0	(x-) 0
민간위탁금	(x599,172) 2,528,031	(x599,172) 2,512,954	(x-) 15,077	(x-) 0.6%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85,596) 85,596	(x85,596) 85,596	(x-) 0	(x-) 0
민간위탁사업비	(x-) 10,000	(x-) 10,000	(x-) 0	(x-) 0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정의)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

나. 배출시설의 분류

32)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 및 가스열펌프

* 법 시행('23.1.1)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는 적용을 2년 유예해서 '25.1.1.부터 적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 및 가스열펌프 설치시설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설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2022.6.30. 공포)했으나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5년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 평생교육국은 2022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할 수 있었고, 2023년 또는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계획에 따른 예산집행과 민간위탁시설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 본 사업은 청소년센터의 이용자 증가, 다둥이카드의 사용 확대 등으로 사용료감면 손실보전금의 부족이 예상되어, 기정예산(287억 6천 9백만원) 대비 6.1%(17억 6천 5백만원) 증액한 305억 3천 4백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2024년 제1회 추경 중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증감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소계	30,534,060	28,768,700	1,765,360	6.1%
민간위탁금	28,299,822	26,534,462	1,765,360	6.7%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234,238	2,234,238	0	-

- 본 추경은 시립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시민 중 저소득, 여성, 다둥이, 시설 대관 분야에 대해 감면 이용료에 대한 손실(감면액)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감면 이용료를 ‘추정’하는 것으로 ‘추정액’은 전(前)분기의 감면액에 6%를 증액하여 산출한 것으로 보임.

〈 2024년 제1회 추경 중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세부산출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합 계	'23년 4분기	'24년 1분기	'24년 2분기	'24년 3분기
필요 예산	3,065,360	700,715	742,758	787,324	834,563
산출 근거	-	실 감면액	23년 4분기×6%	24년 1분기×6%	24년 2분기×6%

- 추경예산 : 1,765백만원 (필요예산 3,065백만원 - 예산현액 1,300백만원)

- 다만, 평생교육국에서 추정한 예산액은 전(前)분기의 감면액에 6%를 증액한 단순 추정액이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 2023년의 감면액을 기준으로 ‘예상 감면액’에 대해 추정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대상별 합계액은 1분기에서 2분기 6.0%가 상승했고, 2분기에서 3분기 7.7%가 상승해 평균 6~7%에 수렴하는 것으로 보이나,
- 2023년 1분기 대비 2분기 저소득 대상자는 21.4%, 여성은 18.2%, 다둥이 대상은 1.7% 증가했으며, 시설대관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황을 보이고 있고, 3분기에서 4분기는 시설대관 감면액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고 있어 평생교육국은 면밀한 검토 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 손실보전금 산출이 적정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사업 2023년 감면 및 보전 세부 내역 〉

(단위:천원)

분기	감면내역					보전내역			
	합계	저소득	여성	다둥이	시설대관	보전액	미보전액	보전율	보전일
합계	2,685,645	425,901	276,693	1,972,490	10,562	1,912,134	773,511	71%	-
1분기	619,951	94,001	59,950	463,785	2,215	619,951	-	100%	'23.5.12.
2분기	657,187	114,149	70,869	471,442	726	591,468	65,719	90%	'23.9.21.
3분기	707,792	112,450	75,213	517,537	2,593	-	707,792	0%	미보전
4분기	700,715	105,300	70,661	519,726	5,028	700,715	-	100%	'24.2.27.

〈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사업 2023년 감면 증감률 현황 〉

(단위:천원)

분기	감면내역				
	합계	저소득	여성	다둥이	시설대관
합계	2,685,645	425,901	276,693	1,972,490	10,562
1분기	619,951	94,001	59,950	463,785	2,215
2분기	657,187	114,149	70,869	471,442	726
증감률(전분기 대비)	6.0%	21.4%	18.2%	1.7%	-67.2%
3분기	707,792	112,450	75,213	517,537	2,593
증감률(전분기 대비)	7.7%	-1.5%	6.1%	9.8%	257.2%
4분기	700,715	105,300	70,661	519,726	5,028
증감률(전분기 대비)	-1.0%	-6.4%	-6.1%	0.4%	93.9%

<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사업 2023년 사용료 감면 센터별 내역 >

(단위 : 천원)

연번	센터명	감면내역					보전내역		
		합계	저소득	여성	다둥이	시설대관	보전액	미보전액	보전율
합계		2,685,645	425,901	276,693	1,972,490	10,562	1,912,134	773,511	71%
1	강동	66,401	8,685	-	57,716	-	47,900	18,501	72%
2	강북	211,686	37,068	6,040	167,247	1,331	157,297	54,389	74%
3	광진	154,309	21,682	-	131,555	1,073	110,411	43,898	72%
4	구로	76,370	11,840	23,598	40,509	424	49,697	26,674	65%
5	금천	63,272	6,116	13,772	43,384	-	45,726	17,546	72%
6	노원	217,141	19,283	26,656	171,202	-	155,376	61,765	72%
7	동대문	23,671	6,772	10,597	6,302	-	14,606	9,065	62%
8	마포	181,766	16,560	33,507	131,699	-	132,159	49,608	73%
9	망우	152,409	40,508	22,962	87,941	998	106,505	45,904	70%
10	목동	202,665	16,413	13,609	170,527	2,116	143,518	59,147	71%
11	문래	186,385	10,167	36,060	140,158	-	129,910	56,475	70%
12	보라매	16,713	4,014	-	9,192	3,507	10,345	6,368	62%
13	서대문	152,968	27,228	18,655	107,085	-	102,321	50,647	67%
14	서울	52,990	52,970	-	20	-	36,953	16,038	70%
15	성동	104,967	19,903	20,723	63,410	932	74,385	30,582	71%
16	성북	249,156	27,533	6,589	215,034	-	177,998	71,158	71%
17	수서	352,390	42,094	16,467	293,828	-	259,740	92,650	74%
18	은평	116,891	16,658	27,458	72,775	-	85,774	31,118	73%
19	중랑	20,156	13,554	-	6,602	-	13,012	7,144	65%
20	창동	34,042	10,386	-	23,656	-	23,680	10,362	70%
21	화곡	49,297	16,467	-	32,649	182	34,823	14,474	71%

바. 국고보조금 반영

- 서울특별시는 2024년 예산 확정 후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의 규모를 조정하고, 국·시비 예산 분담사업(매칭사업)의 경우에는 국비의 증감에 따라 시비를 증감하려는 것임.

1)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추가 채용 지원

- 본 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지원하여 청소년 프로그램 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여성가족부 확정내시의 변경(통보일: 2023.12.27.)에 따라 국고보조금 증액(5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 증액을 반영하기 위해 기정예산(8억 6천 2백만원)에서 0.9%(7백만원) 증액한 8억 6천 9백만원으로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2024년 제1회 추경 중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추가 채용 지원” 증감내역 〉

(단위: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소계	(x601,032) 869,472	(x595,944) 862,104	(x5,088) 7,368	(x0.9%) 0.9%
민간위탁금	(x255,648) 511,296	(x253,476) 506,952	(x2,172) 4,344	(x2.3%) 0.9%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345,384) 358,176	(x342,468) 355,152	(x2,916) 3,024	(x0.9%) 0.9%

- 2024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는 시립청소년시설 21명, 구립청소년시설 26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국·시비 50:50 매칭사업으로, 평생교육국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반영하기 위한 것임.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추가 채용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는 청소년지도사의 채용 인원에만 근거하고 있으며, 국비 확정내시 후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추경 예산의 편성, 센터의 규모와 이용객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배치, 근무환경의 적정성 등 운영상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과 개선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2~2024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추가 채용 지원 추진 실적 〉

회계연도	채용지원 실적
2022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추가 채용 지원 44명(시립 21, 구립 23)
2023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추가 채용 지원 47명(시립 21, 구립 26)
2024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추가 채용 지원 47명(시립 21, 구립 26)

※ 달성목표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추가 채용 지원 실적 : 40명

- ※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 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 본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동, 복지, 보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여성가족부) 확정내시 변경(통보일: 2023.12.29.)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기정예산(40억 2천 3백만원)에서 0.1%(6백만원) 증액한 40억 2천 9백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 2024년 제1회 추경 중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증감내역 〉

(단위: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소계	(x1,276,121) 4,028,982	(x1,274,221) 4,022,991	(x1,900) 5,991	(x0.1%) 0.1%
민간위탁금	(x1,026,722) 3,422,384	(x1,025,186) 3,417,274	(x1,536) 5,110	(x0.1%)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249,399) 606,598	(x249,035) 605,717	(x364) 881	(x0.1%) 0.1%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2022회계연도에도 정부(여성가족부)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38억 6천 7백만원에서 7.9% 증액된 41억 1천 1백만원으로 증액된바 있으며,
 - 반복되는 추경으로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바, 정부(여성가족부) 예산의 조기 확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 편성되어 증액된 예산에 대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본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을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 참여 학생들이 겪는 낙인감에 대한 이슈가 있으며,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타기관의 사업과 중복성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2022년까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사업을 평생교육국에서 최근 2년간(2023년, 2024년) 추진하면서 단순·정형화된 프로그램을 특색있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4년 제1회 추경 중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세부 변경 내역 〉

(단위:천원)

연 번	센터명	유형	가내시	확정내시	프로그램 운영비		
					가내시	확정내시	상승분
총 계			4,022,991	4,028,982	5,991		
민간위탁금			3,417,274	3,422,384	5,110		
1	문래청소년센터	장애20명(2개반)	161,150	161,420	45,449	45,719	270
2	서울청소년센터	장애30명(3개반)	222,635	223,037	64,804	65,206	402
3	마포청소년센터	다문화30명(2개반)	173,910	174,180	46,109	46,379	270
4	강동청소년센터	기본40명(2개반)	188,979	189,248	49,078	49,347	269
5	강북청소년센터	기본40명(2개반)	188,979	189,248	49,078	49,347	269
6	화곡청소년센터	기본40명(2개반)	188,979	189,248	49,078	49,347	269
7	노원청소년센터	기본40명(2개반)	188,979	189,248	49,078	49,347	269
8	창동청소년센터(초등)	기본40명(2개반)	188,979	189,248	49,078	49,347	269
9	창동청소년센터(중등)	기본40명(2개반)	188,979	189,248	49,078	49,347	269
10	동대문청소년센터	기본40명(2개반)	188,979	189,248	49,078	49,347	269
11	보라매청소년센터	기본40명(2개반)	188,979	189,248	49,078	49,347	269
12	은평청소년센터	기본40명(2개반)	188,979	189,248	49,078	49,347	269
13	망우청소년센터	기본40명(2개반)	188,979	189,248	49,078	49,347	269
14	수서청소년센터	기본40명(2개반)	188,979	189,248	49,078	49,347	269
15	금천청소년센터	기본60명(3개반)	262,950	263,353	68,819	69,222	403
16	성북청소년센터	기본60명(3개반)	262,950	263,353	68,819	69,222	403
17	중랑청소년센터	기본60명(3개반)	254,910	255,313	68,819	69,222	40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5,717	606,598	881		
18	망원청소년문화센터	탄력운영15명(1개반)	53,453	53,540	17,010	17,097	87
19	유락종합사회복지관	기본40명(2개반)	117,611	117,786	31,868	32,043	175
20	중구청소년센터	기본40명(2개반)	122,837	123,012	31,868	32,043	175
21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기본40명(2개반)	122,837	123,012	31,868	32,043	175
22	성동청소년센터(시립)	기본40명(2개반)	188,979	189,248	49,078	49,347	269

3)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 본 사업은 가정 밖(위기) 청소년에게 일시 및 단기·중장기적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출의 장기화·탈선 예방 및 가정·학교로의 조기 복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108억 5천 4백만원)에서 0.1%(1천만원) 증액한 108억 6천 5백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2024년 제1회 추경 중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증감내역 〉

(단위: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소계	(x3,628,931) 10,865,485	(x3,623,231) 10,854,685	(x5,700) 10,800	(x0.2) 0.1%
공공운영비	(x-) 1,638	(x-) 1,638	(x-) 0	(x-) 0
민간위탁금	(x2,771,645) 9,232,854	(x2,767,445) 9,224,454	(x4,200) 8,400	(x0.2) 0.1%
사회복지사업보조	(x471,012) 1,244,719	(x470,112) 1,242,919	(x900) 1,800	(x0.2)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386,274) 386,274	(x385,674) 385,674	(x600) 600	(x0.2) 0.2%

- 본 사업은 정부(여성가족부)에서 한파대비 난방비를 시설별 각각 60만원을 추가 증액하기 위하여 확정내시를 통보(통보일: 2023.12.28.)하였으며, 예산 변경 이후 평생교육국은 시비 매칭비율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해 추경하려는 것으로 보임.
-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추가 지원할 시설은 시립청소년복지시설 14개소와 민간 청소년복지시설 3개소는 60만원씩 지원하며, 구립 청소년복지시설 2개소는 50%인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임.

- 시립, 민간, 구립 청소년복지시설은 시설의 규모와 이용 청소년 대상 인원 등 지역별,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 각 시설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난방비를 6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 지원금액보다 더 많은 난방비가 필요한 시설 또는 반납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과 지원이 부족한 시설은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2024년 제1회 추경 중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시설별 운영보조금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시설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총 계		10,863,847	10,853,047	10,800
시립 (14개소)	서남이동	522,600	522,000	600
	서북이동	522,923	522,323	600
	동남이동	523,465	522,865	600
	동북이동	522,600	522,000	600
	용산일시	634,919	634,319	600
	양천일시	577,338	576,738	600
	강북일시	735,231	734,631	600
	신림단기	1,470,910	1,470,310	600
	금천단기	1,095,743	1,095,143	600
	망우단기	844,482	843,882	600
	신림중장기	440,562	439,962	600
	금천중장기	390,256	389,656	600
	은평중장기	440,609	440,009	600
	자립지원관	511,216	510,616	600
구립 (2개소)	은평일시	224,516	224,216	300
	강동단기	161,758	161,458	300
민간 (3개소)	강서단기	436,123	435,523	600
	강서중장기	398,296	397,696	600
	관악자립지원관	410,300	409,700	600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본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상담, 취업 및 자립지원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하 ‘꿈드림’) 4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여성가족부) 확정내시 변경(통보일: 2024.02.06.)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기정예산(23억 9천 5백만원)에서 7.8%(1억 8천 6백만원) 증액한 25억 8천 2백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2024년 제1회 추경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증감내역 〉

(단위: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소계	(x225,325) 2,581,611	(x132,265) 2,395,491	(x93,060) 186,120	(x70.4%) 7.8%
민간위탁금	(x-) 2,130,961	(x-) 2,130,961	(x-) 0	(x-)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225,325) 450,650	(x132,265) 264,530	(x93,060) 186,120	(x70.4%) 70.4%

- 정부(여성가족부)는 본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중 고립·은둔 학교 밖 청소년을 중점으로 꿈드림 4개소에서 대상 청소년에 대한 학습과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나,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중 고립·은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대상 규모 등 실태파악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이 전무한 상황으로 정부(여성가족부) 고립·은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연계 또는 실태조사 및 관련 근거 마련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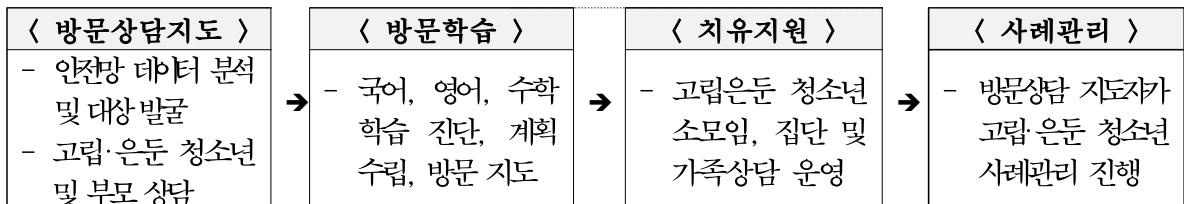
〈 정부(여성가족부)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추진 방향 〉

- 비 전 : 고립·은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목 표
 - 발굴부터 자립까지 원스톱 지원
 - 고립·은둔 청소년을 포용하는 사회여건 조성
- 방향 및 주요과제
 -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선제적 발굴
 - 센터 미등록 사례 및 실태조사 연계 등, 지역 내 고립·은둔 청소년 조기 포착
 - 온라인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확대
 - 맞춤형 서비스 제공(2024년 시범사업 실시)
 - (진단) 지원수요 파악 및 계획 수립, (상담) 1:1 상담 및 마음건강 특화 지원
 - (치유) 청소년·가족 모두의 치유 지원, (학습) 학령기를 고려 학습 지원
 - 자립지원 등 사후관리
 - 사후 재진단 및 생애주기적 지원 연계, 사회진입을 위한 진로·자립 지원
 - 정책 기반 구축
 - 법적근거 마련 및 실태조사 등 실시, 전담체계 구축 및 역량 지원
 -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 및 정책홍보 활성화

〈 평생교육국 고립·은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개요 〉

- 수행기관 : 구립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개소(송파, 노원, 성북, 도봉)
- 사업예산 : 총 450,650천원(국비 225,325, 시비 225,325)
 - ※ 국비:시비=50:50
- 사업내용 : 꿈드림 센터별 상담 및 교육 인력(상담사 1, 교육지도 1) 채용하여 고립·은둔 학교밖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인력규모) 4개구 × 2명 = 총 8명 채용·배치
 - ※ 4개 자치구 인력 채용 완료
 - (추진 프로세스) : 방문상담지도, 방문학습, 치유지원, 사례관리

【 고립·은둔 학교밖 청소년 지원체계 】



사. 국고보조금 반납

- 서울특별시는 ‘2022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려는 것이며,
 - ‘2022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사업 중 시립청소년음악센터의 개관 지연으로 센터 교부금을 미집행하고 70만 5천원을 반납하려는 것임.

※ 2022년 70만 5천원의 반납금이 발생했으나 서초구(13,130원), 서대문구(10,000원), 강남구(15,550원)의 반납금 지연(2023.12.27.)에 따라 2023 회계연도에 처리하지 않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려는 것임.

〈 2024년 제1회 추경 중 “국고보조금 반환” 내역 〉

(단위 : 천원)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산출내역
국고보조금 반환	705	0	705	국고보조금 미반납 집행잔액 (시립청소년음악센터 미교부액)

- ‘2022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사업’은 서울특별시 58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프로그램 기획 및 자문,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6천 4백만원(국비 45백만원, 시비 20백만원, 구비 25백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 시립청소년음악센터의 개관 지연에 따라 2022회계연도에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했으나, 자치구(서초구 13,130원, 서대문구 10,000원, 강남구 15,550원)의 반납금 지연(2023.12.27.)에 따라 본 추경에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려는 것임.

- 예산의 금액에 상관없이 보조금 등 반납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부실한 관리 운영을 초래할 수 있으며,
- 국고보조금은 ‘국가 주도사업’, ‘지자체의 의무부담’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지방 여건상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지방비 부담, 예산집행의 자율성 제한 및 효율적 자원 배분의 저해 등 문제점도 수반되는바, 기 투입한 시재정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한편,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4년 제1회 추경 중 “국고보조금 반환”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계	국비	시비	비고	합계	국비	시비	비고	합계	국비	시비
국고보조금 반환	64,740	45,000	19,740	58개소	63,330	44,295	19,035	57개소	1,410	705	705

※ 시립청소년음악센터 개관 : 2023. 5. 20.

입 법 조 사 관	김 준 년
전 문 위 원	정 찬 일